

- ▶ 2025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자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검색창에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를 검색해보세요.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에서는 나의 민원행정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자원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 ☎ 02-2225-2550

- 부산 : ☎ 051-601-6762~3
- 대전 : ☎ 042-605-0732~3
- 대구 : ☎ 053-630-7127~8
- 광주 : ☎ 062-602-6615~6
- 인천 : ☎ 032-363-9893~4

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 포함)에게 무료로 민·가사, 형사, 행정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

1: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

대부금 상환,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301

4·19혁명 단체 전화번호는?

4·19민주혁명회 | 4·19혁명공로자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02-730-0419 | 02-735-1419 | 02-738-7337

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보훈부 및 자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 '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개통
(www.donate.bohun.or.kr)

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



생활안정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 교육, 건강구호 등 생활기반을 지원합니다.



예우사업

국가유공자 등의 헌신 희생에 감사 예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지원

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재활치료

전쟁, 사고, 가족을 잃은 충격 등의 심리치료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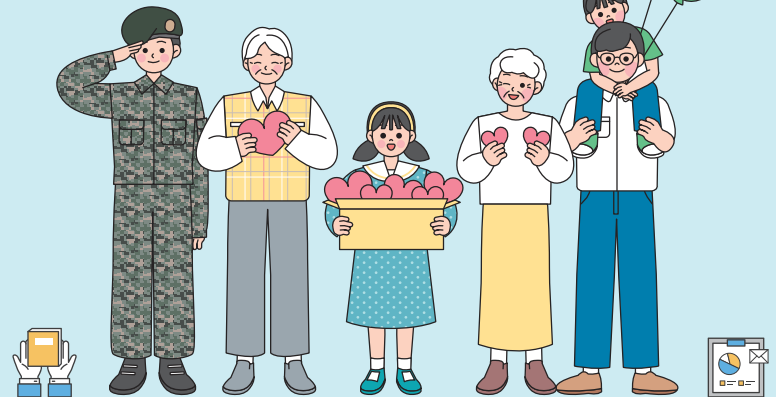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보훈



2025 보훈가족을 위한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에 살아 숨 쉬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두의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30조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보훈의 가치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보훈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훈급여금지원 04
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교육지원 06
수업료,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통지원 07
철도·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08
가점 부여,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10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	
	차량지원 12
보철용 차량관련 세금면제, 통행료감면, LPG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대부지원 14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	
	복지지원 16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지원 18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TV수신료,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시 예우 20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보상금 지급대상은?

- 유족 보상금은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

▶ 4·19혁명부상자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5년도) (단위 : 원)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본인	보상금	3,865,000	3,645,000	3,489,000	3,103,000
	간호수당	3,214,000	3,092,000	2,974,000	1,028,000
	중상이부가수당	2,899,000	2,005,000	1,221,000	-
	합계	9,978,000	8,742,000	7,684,000	4,131,000

		3급	4급	5급	5급 무의탁
본인	보상금	2,900,000	2,433,000	2,015,000	2,289,000

		6급 1항	6급 2항	7급
60세 이상	무의탁	2,113,000	1,967,000	925,000
	고령	1,936,000	1,790,000	748,000
60세 미만	일반	1,839,000	1,693,000	651,000

고령수당	60세 이상 97,000
무의탁수당	5급 이하 및 24세 이상 60세 미만 자녀가 없는 자 274,000
생활조정수당	가구원 3인 이하 242,000~311,000
	가구원 4인 이상 300,000~370,000

- 무의탁 수당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2012. 7. 1. 이전 등록자에 한함)
※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60세 이상인 분에게 지급
-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

▶ 4·19혁명공로자의 '수당' 월 지급액은? (2025년도)

-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이 '18. 1. 16. 자로 '4·19혁명공로수당'으로 변경되었으며 월 지급액은 461,000원입니다.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4·19혁명 유족의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5년도)

(단위 : 원)

		일반	60세 이상	무의탁
배우자	4·19 사망	2,036,000	2,185,000	2,310,000
	상이1~5급, 6급 상이사항	1,765,000	1,914,000	2,039,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항	648,000	797,000	922,000
부모	4·19 사망	2,001,000	2,098,000	2,275,000
	상이1~5급, 6급 상이사항	1,737,000	1,834,000	2,011,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항	614,000	711,000	888,000

자녀 (25세 미만, 장애)	4·19 사망	상이1~5급, 6급 상이사항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항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2,361,000	2,050,000	935,000	1인 양육 100,000 2인 양육 370,000 (1인 추가 시 370,000 가산)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000 / 2인 양육 185,000 (1인 추가 시 185,000 가산)		
2명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274,000 (1인 추가 시 274,000 가산)	독자사망 수당	부모 274,000
무의탁 부모양육수당	배우자 149,000	생활조정 수당	가구원 3인 이하 242,000~311,000 가구원 4인 이상 300,000~370,000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
- 상이등급 6~7급 부상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은 유공자 사망원인(상이처 관련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이 7급 유족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 무의탁수당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는 그 손자녀까지 모두 없는 경우
※ 수권 유족이 '배우자(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 ▶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한 분이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은 신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훈청에 문의)

▶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시행(16. 6. 23)
- (발급가능 금융기관) 10개 은행(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급)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 단,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

▶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려면...

- 보훈예우수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금액 및 지급범위는 해당 지자체 문의

4·19혁명부상자 및 자녀, 4·19혁명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4·19혁명공로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94. 1. 1. 이후 출생자)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간 지급액 :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 지급시기 : 4월15일,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
-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 등록금(수업료)이 면제됩니다.
-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면제기간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면제학점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국가유공자 본인 및 4·19혁명사망자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없음 (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입학학기 제외)만 면제)

-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 학습보조비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4·19혁명사망자의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6,000원을 2회(4월 15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보훈관서 문의)

-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및 보훈장학금(특수교육, 대학원 본인)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

4·19혁명부상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 4·19혁명공로자 및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 할인

▶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이용방법	지원내용	감면율
기 차	·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 승차권 교부	·KTX, SRT 등 전 차종 이용 가능 ·상이 1~2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연간 무임 6회(승차일 기준), 50% 할인(무제한) ·특실 제외	무임 6회 50% 할인 (무제한)
지 하 철	·복지카드 사용 ·무인 발권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접촉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 (보증금 500원 필요)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1~7급)
공항철도	·복지카드 사용 또는 ·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 승차권 교부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직통열차는 제외	무임 (1~7급)
시내버스 (농어촌)	·복지카드 사용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광역, 좌석, 마을버스 제외	무임 (1~7급)
시외버스	·승차 시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상이 1~5급 농어촌버스 무임, 시외 버스 70% 할인	70% 할인 (1~5급) 30% 할인 (6~7급)
고속버스 (우등고속)	·매표창구에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50% 할인 (1~5급) 30% 할인 (6~7급)
국내 여객선	·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종이승선이용권 폐지	·육지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상이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1~5급) 50% 할인 (6~7급)
국제 여객선	·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한국 ↔ 중국 및 일본간 ·일부 선박회사 ·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함 ·일부 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객실요금 20% 할인 (1~7급)
국내선 항공기	·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상이 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국가유공자 공항이용료 50% 할인 (1~3급은 동반자 1인 포함) → 티켓 발권 시 포함 * 자그한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할인율 별도 확인 필요	50% 할인 (1~7급) 30% 할인 (공로자 및 수권 유족)

※ 부정 사용 확인 시 관련 규정(여객운송약관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법)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무료지원(상이 1~4급만 해당)

- 교육장소 : 전국 8개 중증장애인 운전지원센터(운전면허 시험장 내)

*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기타지원' 참고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 ▶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4·19혁명사망자 및 6급 이상 부상자의 자녀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 (가점지원은 제한 없음)

▶ 채용시험 시 가산점(10% 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읍·면·동주민센터의 어디거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가점
 - 국가유공자 본인,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10%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가족: 5%

▶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으로 신청 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
- 운전직·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시 추천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주20시간)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 및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서약서, 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청
※ 탁부처(자치단체 포함) 중복지원 불가
- 학습 진도율 8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수강완료 사실확인서, 응시확인서류)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
(연간 1,500,000원)
 - 유가족 총 1,500,000원
(연간 750,000원)
- ※ 단, 법정취업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 수강료 외 시험응시(수수)료, 검정(수수)료, 교재비는 미지원

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 워크넷 정보, 취업수강료 지원,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사이트 주소: <https://job.mpva.go.kr>



▶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단, 치아보철, 성형 등은 제외)
 - 4·19혁명부상자는 국비진료
 - 4·19혁명공로자, 보훈부에 등록된 유가족 60% 감면
 - ※ '12.7.1 이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모모두)에 한함
 - ※ '12.7.1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
 - 중앙보훈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랑도로 61길 53(☎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042-939-0114)
 - 인천보훈병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032-363-9800)
 - 보훈공단 서울요양병원 : 서울시 강동구 진랑도로 61길 53(☎ 02-2225-1123)
 - 보훈공단 광주요양병원 :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4-5600)

▶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

- 419혁명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수권 유족 1인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정병원에서 감면 진료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후,
-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4·19혁명부상자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건강보험가입자만) : 60% 감면(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제외)

▶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 4·19혁명부상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 ※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
-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

-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어요-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 생활수준조사 결과,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

▶ 상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서 4·19혁명부상자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 보철구 수령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함
 - 국가유공자의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접수
- 4·19혁명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 지급
 - 철 크러치, 목발, 지팡이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또는 보장구 센터 방문시 지급
 - 기타 품목은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



4·19혁명부상자 본인만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각각의 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 불가

▶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승용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경유 차량),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 지방세 면제요건
 -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
 -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화물차, 소형 특수차 중 1대

유의사항

- 지방세(취득세)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배기량 제한없음 / 면제금액 500만원 한도
-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개발사업지방채 : 배기량 제한 없음

▶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

- 자동차표지는 일반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가까운 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일반표지 발급대상(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 일반표지 발급대상이면서, 상이등급 1~3급은 전원, 상이 4~6급2항 중 상이호수에 따라 적용(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
- 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 50~80%(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다름)
 - 국가유공자 승차 시에 한하며, 자동차표지 부착 및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

- ※ 보철용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꼭 신고해 주시고,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에 해지신청 해주세요.
- ※ 보철용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영업용 보철용차량 및 사업용 개인택시(보철용차량 등록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상이 1~5급은 면제, 상이 6~7급은 50% 할인)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6~10인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중 1대
 -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
- ▶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1688-3017) 및 엠피온(1544-8202)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에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세금인상분 지원(세금 인상, 인하에 따른 변동 있음)
 - ※ 50ℓ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장·직장·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일기준)
 -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
- '23.1.1.부터 전국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시내버스 승차요금 인식 → 국가보훈부가 카드사와 사후 정산
-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충전비 : 월 29,000원 한도 내 (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
 - 구매보조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
 - ※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이 1~5급

▶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 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3.5×4.5cm)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30일 정도 소요)
 - 신용카드 기능(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 / 직불카드 기능(신한은행, 우체국계좌 만 가능)

LPG·전기·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

-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완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
 - ※ 본인만 사용해야 함
 - ※ 유공자 사망, 세대분리, 해외체류, 차량매각,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을 받고 싶습니다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
 - 주택우선공급신청서(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개인정보동의서(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추천서약서(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1통
 - 무주택입증서류 :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
 ※ 매년 1월 초 접수기간(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에는?
 - 배점기준(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 순위를 결정
 -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
 ※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경우
 -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
 -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 사업(창업)대부 : 본인,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
 - 농토구입대부 :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
 - 생활안정대부 : 생활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
 ※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종류 및 조건

구 분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 분양	4,000~8,000만원	연 3%	20년균등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시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주택구입(신축)	4,000~8,000만원	연 3%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5,200만원	연 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택개량	800만원	연 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농토구입	3,000만원	연 3%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 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시)	300만원 (1,000만원)	연 3%	3년균등 (보철용 차량 5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연대보증인(직접대부 시)

- ※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는 4·19혁명 부상자 본인만 가능
- ※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위탁은행 문의)
- ※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한도300만원)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24.1.)
-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농협은행(NH뱅킹) 앱을 통해 신청

- 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

▶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

-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
 - 농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집에서 돌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 노인성 질환 및 상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 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조사
- 생활수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주 1~2회, 재가보훈실무관이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대상(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
 - 국가유공자, 수권 배우자, 수권 부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부상자 : 본인부담액의 80% 지원
 - 공로자 및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 : 본인부담액의 40% 지원(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

▶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 033-769-2000, 전주보훈요양원 ☎ 063-220-0777

-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수권 유족(부모)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요양등급 판정자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시설급여" 해당자
- ※ 주간보호는 "재가급여" 해당자도 가능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의 일부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유족(자녀 제외)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
 - 감면율
 - 부상자 : 본인부담액의 80% 감면
 - 공로자, 배우자, 유족(부모) : 본인 부담액의 40% 감면(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60%)
 -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

▶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 신청대상 : 4·19혁명유공자 및 수권유족(자녀 제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
 - (상이자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관계 서류 필요
-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
- 입소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
 - ※ 보훈원 031-250-1521

▶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어요

- 신청대상 : 민법상 성인인 4·19혁명유공자 및 수권 유족 중 무주택자로,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입주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복지타운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
 - ※ 복지타운 031-250-1562
- 임대보증금 : 8평형(독신세대) 150만원, 13평형(부부세대) 250만원 *월 관리비 별도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 관할 보건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
 - 보건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재해발생신고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소방서, 경찰서 또는 시·읍·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

▶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기타지원 >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

협약콘도(명)	내용	예약문의
보훈휴양원	충주 보훈휴양원 인증 이용 가능	☎ 043-854-2121 또는 http://condo.bohun.or.kr
소노호텔&리조트(前 대명)	15개 지역(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주말, 연휴, 성수기(예약 제외)) *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 요금으로 이용 가능	전화(☎ 1588-4888) 또는 홈페이지 https://www.sonohotelsresorts.com * 이용권 번호 물은리 : 52099159 객실 + 조식 : 52099129
한화리조트	12개 지역(20평형대 디럭스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잔여 객실에 한함) *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	홈페이지 예약 www.hanwharesort.co.kr * 고객센터 : 11806536
일성리조트	7개 지역(19~40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제주비치는 금·일 주말요금 적용 * 금, 토,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 별도 요금 적용 *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	전화예약(☎ 1566-8113) 또는 예약사이트 www.ilsungresort.co.kr * 법인번호 : 62239063
호반호텔앤리조트	3개 지역 * 연중(주말·연휴 제외 /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 * 아일랜드리조트(안양도), 포레스트리조트(제천), 레스트리조트(제천) 주말, 연휴 예약불가 *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	홈페이지 예약(www.resom.co.kr) * 리솜 홈페이지(resom.co.kr)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 회원정보에서 "MOU" 선택 > 업체 "국가보훈부" 선택 후 인증번호(1400) 입력 > 회원가입 완료 후 "패키지 예약" 진행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 소재(7.9평형 스탠다드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 성수기,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 요금 별도문의	전화예약(☎ 043-640-7000)
주문진리조트	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10~19평형대 타입) * 비수기 평일 주중, 주말 * 성수기, 연휴기간은 별도 문의	전화예약(☎ 033-661-7400)

* 예약번호,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름
- 관할 보건청에서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신청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국가유공자(수권 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유공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
 - * 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유공자의 제매 포함

▶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상이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수권 유족 (단,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100% 감면시설 :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50% 할인시설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세금공제 혜택 - 4·19혁명부상자

구 분	감면 내용	감면방법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연말 소득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	국가보훈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전송 (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불요)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상속세, 증여세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상이국가유공자 중 1~3급, 50% 감경	

※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본인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함.

▶ 증명발급 수수료 등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구 분	감면율	감면방법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 - 4·19혁명부상자

구 분	감면 내용	감면방법
TV 수신료 면제	면제(월 2,500원)	수신료 면제 감면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한전고객센터(123)으로 신청
전기요금 할인 (상이 1~3급만 해당)	가정용 전기요금 월 1만6천원 한도 감액 (하계(6. 1.~8. 31):월 2만원 한도)	한전고객센터(123)으로 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상이 1~3급만 해당)	난방용 동월기 72,000원 *적용 24.12.1.~25.3.31.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확인) 기타 월 9,900원 할인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도시가스 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지역난방에너지 요금 면제 (상이 1~3급만 해당)	·월 5천원 감면 (연1회 감면총액 일괄 소급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지역에 한함.	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에 팩스로 신청(Fax. 031-705-4231, 4236)
전화요금 감면	· 시내·시외통화료 50% 할인 (시외는 3만원 범위내)	해당 전화국(통신사)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
이동 전화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사용료의 35% 할인	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
인터넷 통신요금 감면	· 인터넷 통신요금 30% 할인	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
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동반 3인 포함)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문의 후 가입

▶ 먼저,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주세요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령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 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계약제결 산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관, 장의 차량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반드시 '장례기간' 중 유족이 신청

▶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에 신청하세요



①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



②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



③ 묘지선택 후 신청

▶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

- 안장식 일정을 국립4·19민주묘지와 협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 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
-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 화장 하신 후, 국립묘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안장 하시면 됩니다.
※ 화장장 감면 유·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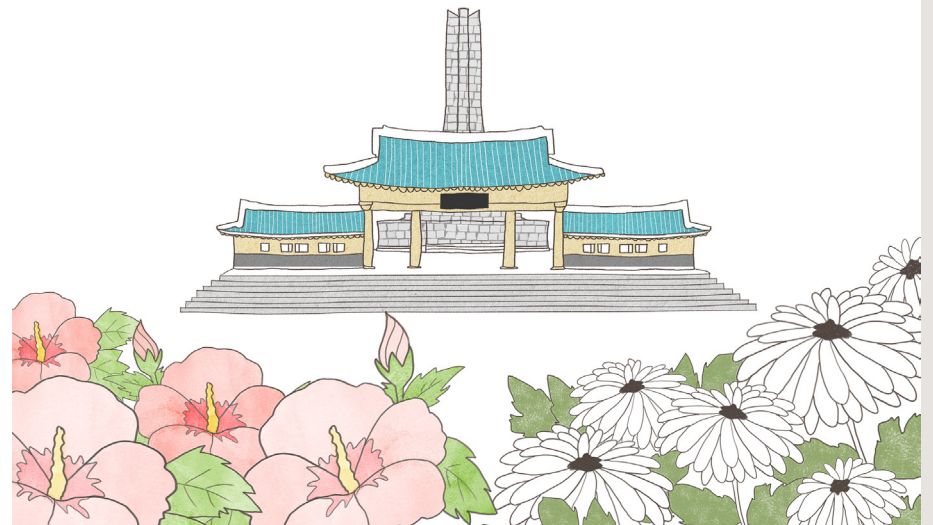
▶ 배우자를 합장하려면...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설 묘지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립4·19민주묘지 : 서울시 강북구 4·19로 8길 17 (T. 02-996-0419)
- 국립3·15민주묘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T. 055-253-9315)

▶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래 국가유공자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국적상실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관할보훈청·국립묘지에 신청



▶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

-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봉안장·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비석 설치 사진(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안장확인서' 추가로 필요하며 '23.1.1.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가능
-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신고(전화)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승계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
-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여권 사진 크기)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19혁명 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 사망 시 다음 보상금 받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
- 지급순위
① 4·19혁명부상자 본인 사망 시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② 4·19혁명부상자 유족 사망 시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장례주관 입증서류 제출)
- 지급금액
· 상이 1급 : 1,704,000원
· 상이 2~7급 : 1,127,000원(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 1,444,000원)
· 보상금 수권유족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 1,127,000원

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

- 본인·배우자·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또는 국적 상실, 국적 회복
- 국가유공자의 결혼·재혼(배우자 포함)·이혼·자녀출생·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소멸된 때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 국가유공자(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 유족이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기관명	관 할 지 역	주소·전화번호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02)3785-0815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02)944-9260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화성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801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김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032)588-4100
경기북부보훈지청	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경기동부보훈지청	성남,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대경빌딩 3층(연남동) (031)289-2302
강원서부보훈지청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033)258-3609
강원동부보훈지청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6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충남서부보훈지청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천안, 아산, 공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041)589-4900
충북남부보훈지청	청주, 진천, 보은, 영동, 옥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043)841-8800

기관명	관 할 지 역	주소·전화번호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010
경북북부보훈지청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	경북 예천군 행북1길 5 (054)650-1400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051)469-8991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양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00
경남동부보훈지청	김해, 창원, 밀양, 거제, 창녕, 의령, 함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진주, 사천, 통영,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062)975-6500
전남동부보훈지청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061)720-3200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 남원, 원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사로 59, 3층 (064)710-8411

- 〈참고〉 '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소득 인정액 상한	일반가구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7,190,742
	취약가구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국가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1~3급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자까지 의료급여 지원

